

제238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2019. 1. 14. ~ 1. 21.)

의원 발의 조례안

(조례 3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4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9-5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1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4
----------	--------

발의일자	2019. 1. .
발 의 자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총무위원회 소관사무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무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3호)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2019.1.10.~2019.1.15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2호·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u>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u>의회</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3.(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u>총무위원회</u> 가. <u>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산업건설위원회</u> 가. <u>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u>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u>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3.(현행과 같음)</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u>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5	발의일자	2019. 1. .
		발 의 자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1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에 맞춰 월정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제2항)

1) 2019년도 : 1,798,910원

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여비지급 기준 변경(안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협 조 : 기획감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반영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2019.1.10.~2019.1.15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거창군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의원”을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2019년도 월정수당 : 월 1,798,910원
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u>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③ (생략) ④ <u>의원이</u>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u>월정수당은 월 1,763,060원으로 한다.</u></p> <p>제7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외 여비는 <u>별표1, 2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거창군 의회 의원에</u>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② <u>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u> 1. 2019년도 월정수당 : 월 1,798,910원 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 <u>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u></p> <p>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p>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거창군의정비심의회 의정비 결정결과」 2018.11.23.

1.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4에 따른 최대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가.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 2.6퍼센트 적용하여 인상
 - 나. 2020년~2022년 :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하여 인상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4.11.19.>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26	실비(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90)	37
	라	26	실비(상한액: 7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13
----------	---------

발의일자	2019. 1. .
발 의 자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11명)

1. 제안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관 중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변경함(안 제2조 제2호)

1)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나.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변경함(안 제2조제4호)

1)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 : 2019.1.10.~2019.1.15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을 “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u>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u>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u>,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u>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u>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u>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u>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u>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에</u>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u>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u>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u>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u>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u>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u>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